## 미

#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이 나아가야 할 방향

: 저작자. 저작물의 보호와 관련된 관점에서

박희경 MBC 법무팀 차장

#### 목차

- 1 들어가며
- 2 인공지능 기본법에 저작물의 보호와 관련된 논의가 필요한 이유
- 3 투명성 의무 등 후속 입법 관련 논의가 필요한 내용
- 4 나가며

### 요약

2025년 1월 21일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이하 '인공지능 기본법')이 제정되었다. 법이 제정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았으나, 인공지능 기본법은 2026년 1월 22일 전면 시행된다. 이는 단계적으로 도입돼 2026년 6월 이후 전면 시행되는 EU의 「AI ACT」보다 시행 시점이 빠르다. 인공지능 기본법의 주된 제정 목적은 인공지능의 발전을 촉진하는 것이다. 그러나 인공지능, 특히 생성형 인공지능을 만들어 내기 위해서는 양질의 저작물 학습이 필요하고, 앞으로도 학습은 계속 이뤄질 것인바, 이러한 저작물을 창작한 저작자들의 학습데이터 공개 및 저작물에 대한 보상에 관한 입법안이 인공지능 기본법에 추가로 반영될 필요가 있다. 또한 앞서 본 바와 같이 인공지능 기본법의 구체적인 내용과 관련하여 후속 논의가 빠르게 이뤄질 필요가 있는데, 인공지능 기본법의 의구체적인 내용 중 상당부분을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어 시행 이전까지 구체적인 규율에 관한 후속 논의가 필요하다. 이 글에서는 인공지능 기본법상 '투명성 확보의무'와 '결과물의 표시 의무 등' 개정 및 후속 입법이 필요한 부분도 더불어 다른다.

## 1. 들어가며

2025년 1월 21일, 한국의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이하 '인공지능 기본법')이 제정되었다. 이에 앞서 EU 이사회는 2024년 5월, 인공지능에 관한 포 괄적 법안으로 EU 「인공지능법」(Artificial Intelligence Act, 이하 'EU AI Act')을 최종 승인하였다. 각 국 정부와 의회는 인공지능에 대한 포괄적 법안을 제정하는 것에 큰 관심을 기울이고 있어, EU AI ACT와 인공지능 기본법은 제정 사실 자체로도 많은 주목을 받았다.

반면 EU AI ACT가 승인된 지 두 달여 뒤, 유럽 작가 협의회를 포함한 저작자 단체들이 유럽의회에 '인공지능이 유럽 창작 공동체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공동성명(Joint Statement: The Impact of AI on the European Creative Communities)'을 제출한 사실은 덜 알려져 있다. 이 성명에서 저작자 단체들은 인공지능이 문화 및 창작 분야를 포함해 우리 삶의 다양한 측면을 향상시킬 수 있는 잠재력을 지닌 획기적인 기술 발전임을 먼저 언급하였다. 그러면서도 현재 존재하는 모든 생성형 인공지능 모델은 불투명한 방식으로 학습되었다는 점, 저작권 보호를 받는 방대한 양의 콘텐츠와 개인 데이터를 인터넷에서 무단으로 수집하고 복사하여 훈련되었다는 점, 이 과정에서 창작자들에게 어떠한 승인도 받지 않았으며 정당한 보상도 지급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이들은 유럽 의회와 협력하여 인간의 창의성을 향상시키고 독창적인 콘텐츠를 장려하며 수십만 명의 창작자를 보호할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언급하였다. 이와 같은 언급은 인공지능이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 시대, 각국이 인공지능의 발전을 위하여 경쟁하고 있는 시대에 창작자가 인공지능에 관한 포괄적인 법안에 기대하는 바를 잘 보여준다.

<sup>1)</sup> https://europeanwriterscouncil.eu/241204\_aioncreativecommunities/ 참조 (마지막 검색, 2025. 2. 16.) 공동성명에서는 텍스트데이터 마이닝, opt out, 투명성 의무에 대한 지지 등 EU AI ACT의 여러 규율에 대한 의견도 밝히고 있는데, 본 글에서 다루고자 인공지능 기본법의 내용과 EU AI ACT의 내용 등이 다소 다르고 쟁점에도 차이가 있어 저작자 단체들의 일부 입장만을 본 글에 기재하였다.

the impact of Al on the European creative community

Output

Figure

[그림 1] 인공지능이 유럽 창작 공동체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공동 성명 제출

출처 : 유럽 작가 협의회 홈페이지

EU AI Act는 위험 단계별로 순차적으로 시행되어 2026년 6월경 전면 시행될 예정인 반면, 그보다 늦게 제정된 인공지능 기본법은 2026년 1월 22일에 전면 시행될 예정이다. 하지만 인공지능 기본법은 그 구체적인 내용을 대통령령 등에 위임한 부분이 많다. 이제부터 인공지능 기본법에 대한 많은 후속 논의가 빠르게 진행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본글에서는 저작자와 저작물의 보호와 관련하여 추가적으로 입법이 필요한 내용과 현행 입법에서 수정 또는 구체적인 의견 수렴을 통해하위 법령의 입법이 필요한 쟁점을 중심으로살펴보려고 한다.

# 2. 인공지능 기본법에 저작물의 보호와 관련된 논의가 필요한 이유

한국의 인공지능 기본법은 인공지능의 발전과 이를 통해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주안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인공지능 발전을 위한 계획의 수립과 지원 등을 규정한 내용이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입법 과정에서 저작물의 보호, 개인정보 보호 등과 관련된

내용의 포함 여부도 논의되었으나, 인공지능 기본법에는 구체적인 내용을 포함하지 않고 규제가 필요한 부분은 추후 개별법으로 처리하기로 논의되었다.<sup>2</sup>

저작자들은 상당한 시간과 노력을 들여 저작물을 만들었지만, 인공지능 산업이 급속도로 발전하면서 저작자들이 모르는 사이에 자신의 저작물이 생성형 인공지능 등에 대량으로 학습되었다. 저작자들은 기존의 저작물 사용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하였다. 이에 더하여 인공지능이 학습을 거듭하여 인공지능의 산출물이 인간의 저작물을 능가하게 되면 보상을 받기 어려운 상황에 처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저작자들은 창작을 이어가기어려워질 것이다. 그런데 현재 산업의 흐름은 인공지능의 빠른 발전을 우선시하고 있으므로, 입법 등의 방법으로 창작에 대한 보호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다른 방법으로 창작의 영역이 보호되기는 어렵다.

또한 헌법은 창작자의 권리를 법률로써 보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헌법은 모든 국민의 재산권을 보장하도록 규정하는 것 외에 별도로 저작자, 발명가, 과학기술자와 예술가의 권리를 법률로써 보호한다고 규정하였다(헌법 제22조 제2항)<sup>3</sup>. 이에 따라 저작권법 등은 창작자의 권리를 보호해왔다. 우리는 제도적으로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창작한 자의 권리와 이에 인접하는 권리를 보호하고 문화 및 관련 산업의 향상발전을 추구해왔다. 저작권법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려면 이용 허락을 얻어야 하고, 적절한 보상을 지급해야 한다. 그러나 인공지능 시대에서는 이러한 창작자의 권리가 보호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므로, 시대의 변화에 따라 필요해진 내용에 대하여 입법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그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학습데이터 공개와 보상 의무에 대한 입법을 들 수 있으며, 아래에서는 그 두 가지 내용에 대하여 살펴본다.

<sup>2)</sup> 제419회 법제사법위원회 제2차(2024, 12, 17,) 회의록 참조

<sup>3)</sup> 헌법재판소는 해당 조항의 의미와 관련하여 "저작자 등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은 학문과 예술을 발전·진흥시키고 문화국가를 실현하기 위하여 불가결할 뿐 아니라, 이들 저작자 등의 산업재산권을 보호한다는 의미도 함께 가지고 있다."고 설시한 바 있다(헌법재판소 2002, 4, 25, 선고 2001헌미200 결정 참조).

## 1) 학습데이터 공개 의무

양질의 학습용 데이터는 상당 부분 오랜 시간을 들여 창작된 인간의 저작물로 구성된 경우가 많다. 학습데이터의 중요성은 인공지능 기본법의 제정 이유 등에서도 드러난다. 인공지능 기본법은 인공지능 산업 육성을 위한 방법 중 하나로 '학습용 데이터' 시책 수립 등을 규정하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학습용 데이터의 생산, 수집, 관리, 유통 및 활용 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 추진을 하여야 하며, 정부는 지원대상 사업을 선정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제15조).

EU AI ACT에서는 '학습 콘텐츠 공개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EU AI ACT는 범용 AI 모델 제공자(Providers of General-Purpose AI model)에 대한 의무로 (1) 훈련 및 시험과정, 평가 결과 등 모델의 기술 문서를 작성하고 최신 상태로 유지하며, (2) 범용 AI 모델을 AI 시스템에 통합하려는 AI 시스템 제공자에게 일정한 정보와 문서를 작성하고, 최신화하여 이용 제공하고, (3) 저작권 준수와 관련된 정책을 시행하고, (4) AI Office가 제공한 양식에 따라 범용 AI 모델 훈련에 사용된 콘텐츠에 관한 충분히 상세한 요약을 작성하고 공개하여야 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제53조). 미국의 경우, 주 단위로 개별 법제화가 추진되고 있으며, 캘리포니아 주에서는 2024년에 「생성형 AI 저작권 공개법안」(Generative AI Copyright Disclosure Act of 2024) 4이 발의되기도 했다(현재 시점에서는 회기만료).

반면 인공지능 기본법에는 '학습 데이터 공개 의무'가 포함되지 않았다. 입법 과정에서 학습데이터의 공개 의무와 관련된 논의는 있었다. 법제사법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생성형 AI 학습데이터 공개 의무가 인공지능 기본법에 포함되지 않은 것에 대하여 시민사회나 학계에서 우려가 있다'는 점이 언급된 바 있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이러한 기본권 침해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와 국회가 상황을 지켜보면서 후속 입법을 준비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입법자들은 모든 것을 다 담아내다 보면 기본법 제정이 어려워지므로, 우선 법제정부터 하고 제기되는 문제들은 후속 논의에서 정리하는 것이 맞다고 결론을 내렸다.5

<sup>4)</sup> https://www.congress.gov/bill/118th-congress/house-bill/7913 참조 (마지막 검색, 2025. 2. 19.)

<sup>5)</sup> 제419회 법제사법위원회 제2차(2024, 12, 17,) 회의록 참조

전 세계적으로 인공지능개발사업자들은 생성형 인공지능에 상당량의 콘텐츠와 데이터를 무차별적으로 학습시킨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저작권자들에게 이용 허락을 득하고 대가를 지급한 사례는 많지 않다. 생성형 인공지능의 학습데이터가 대규모이고, 현재까지의 기술로는 학습된 데이터를 밝혀내기 어려운 점을 고려하면, 개별 저작권자가 자신의 저작물이 학습데이터로 이용되었음을 입증하는 것은 쉽지 않다. 이에 저작권자들은 과거와 미래의 저작물 사용과 관련하여 자신의 권리를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요청으로 학습데이터 공개 의무를 주장하고 있다.

학습데이터 공개 의무가 인공지능 기본법이 아닌 다른 법에 규정되어야 한다는 의견도 있으나, 인공지능 기본법에는 이미 인공지능등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인공지능 기본법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다(제5조 제1항). 또한 관련된 다른 법률을 제·개정 하는 경우에도 이 법의 목적에 부합하도록 하여야 하므로(제5조 제2항) 학습데이터 공개 의무는 다른 법보다 인공지능 기본법에 규정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덧붙여 구체적인 학습데이터의 공개 정도와 방식은 EU AI ACT 및 입법설명서 (RECITAL) 등을 참고할 수 있다. EU AI ACT는 AI 시스템 제공자를 수범자로 하여 AI Office 가 제공한 템플릿에 따라 AI 훈련에 사용된 콘텐츠에 관한 '충분히 상세한 요약'을 공개하도록 하고 있다. 입법설명서(RECITAL) 107에서는 AI Office가 제공한 양식은 간편하고, 효과적이고, 학습데이터의 공개라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양식이어야 한다고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훈련에 사용된 주요 데이터 컬렉션 또는 데이터 세트를 나열할 수 있으며, 그 예로 대규모의 민간 또는 공공 데이터베이스나 데이터 아카이브를 포함할 수 있고, 사용된 기타 데이터 출처에 대한 서술적인 설명을 제공하는 것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6

<sup>6)</sup> https://ai-act-law.eu/recital/107/ 참조 (마지막 검색 2025, 2, 19,)

#### 2) 학습된 데이터에 대한 보상 의무

많이 알려진 바와 같이 해외에서는 저작권자들이 자신의 저작물을 학습하였다는 이유로 인공지능개발사업자를 상대로 분쟁을 제기한 사례가 이미 수십 여 건에 이른다. 작가가 마이크로소프트를 상대로, 음반사 그룹이 AI 음악 생성서비스 업체를 상대로, 뉴욕타임즈가 마이크로소프트와 오픈 AI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등 분쟁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 국내에서도 최근 방송사들이 인공지능개발사업자를 상대로 양질의 뉴스 데이터를 무단으로 학습한 것에 관하여 저작권 침해 소송을 제기하였다. 이에 대해 인공지능개발사업자들은 저작권자에 대한 보상 체계를 구상하거나 합의를 제안하는 대신 공정이용 등을 주장하며 적극적으로 법적 분쟁에 대응하고 있다.

[그림 2] 지상파 3사, 네이버에 뉴스데이터 저작권 침해 소송



그런데 최근 톰슨 로이터가 AI 기반 법률 검색 엔진 스타트업인 로스 인텔리전스를 상대로 제기한 저작권 침해소송에서 미국 델라웨어 연방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다. 톰슨 로이터는 로스 인텔리전스가 자신들의 법률 서비스인 웨스트로우 검색 엔진 데이터를 동의 없이 AI학습에 사용했다고 주장했으며, 로스 인텔리전스는 공정이용에 해당한다고 반박했다. 연방법원은 공정이용을 판단하는 4가지 기준 (1) 저작물 이용의 목적과 성격, (2) 원저작

물의 성격, (3) 이용된 부분의 양과 중요성, (4) 원저작물의 잠재적 시장 또는 가치에 미치는 영향을 바탕으로, 상업적인 사용이며, 변형적 이용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 로스 인텔리전 스는 톰슨 로이터의 시장 대체제를 개발하여 경쟁하려고 했다는 점 및 현재 시장뿐만 아니라 잠재적 파생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점 등을 고려하여 로스 인텔리전스의 데이터 이용이 공정이용에 해당한다는 주장을 배척하였다. 이는 인공지능과 저작권자들 사이에서 가장 중요한 쟁점 중에 하나였던 공정이용에 대한 첫 번째 판단이어서 관련 소송에 많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된다.

저작권자에 대한 보상은 소송뿐만 아니라 입법을 통한 해결 방안 모색도 가능하다. (트럼프 행정부에서 철회되기는 하였으나) 바이든 행정부의 행정명령에는 인공지능으로 인해 야기되는 저작권 쟁점을 다루는 인공지능 연구 공개와 저작권과 인공지능에 대해 필요한 행정조치를 대통령에게 권고하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이번 인공지능 기본법의 입법 과정에서는 저작권 보호, 저작권자에 대한 보상 등과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논의가 이뤄지지 못하고 저작권법 등 각 법에서 규정하도록 우선 정리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앞서 본 바와 같이, 인공지능 기본법은 인공지능등에 관하여 다른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인공지능 기본법의 목적에 부합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저작권법 등에 보상 의무 등을 별도로 규정하는 경우, 인공지능 기본법의 목적에 부합하는지 여부에 대한 논란이 있을 수 있고, 저작권자 보호에 사각지대가 생길 수 있다. 입법 논의 과정에서 '저작권에 관하여는 저작권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는 내용을 인공지능 기본법 제5조 제3항으로 추가하는 안도 제시되었으나, 받아들여지지는 않았다.

향후 인공지능 기본법에 저작권자에 대한 보호 및 보상의 원칙과 관련된 내용이 포함되지 않고, 보상의 필요성에 대하여 인공지능개발사업자들과 합의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저작권자들은 자신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많은 시간과 비용을 들여 소송 제기 등 법적인 권리 구제 방법을 선택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리고 저작권자와 인공지능개발사업자 사이에 분쟁이 계속되는 경우, 그에 따른 사회적 비용은 계속 증가할 것이다.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줄이고, 인간의 창작 산업과 인공지능 산업이 함께 발전하기 위해서는 저작자의 권리를 존중하고 보장하는 방안을 사회적으로 논의하고, 이를 인공지능 기본법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

# 3. 투명성 보장 의무 등 후속 입법 관련 논의가 필요한 내용

글이나 음악 창작에 인공지능이 활용되는 것 이상으로 이제는 종합예술의 한 형태 라 구현이 쉽지 않을 것으로 여겨졌던 영상저작물까지 인공지능 프로그램만을 이용하여 제 작하는 것이 가능해졌다 7이와 같이 저작물 창작에 인공지능의 확용이 금속도로 증가하고 있으나. 그 과정에서 딥페이크 영상, 가짜 뉴스 등이 보는 사람들을 기만하거나 잘못된 정보 를 제공하여 사회적인 무제가 되고 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한 수단 중 하나로 인공지능에 대 한 포괄적인 법제에는 투명성 확보 의무가 규정되어 있다.8



[그림 3] 생성형 AI로 제작한 영화 '원모어 펌킨'

출처 : 스튜디오프리월루전 유튜브

57

<sup>7)</sup> 두바이 국제 영화제에서 대상을 받은 영화 '원모어 펌킨'(권한슬 감독 제작)은 무료 AI 오픈소스를 활용하여 5일 만에 제작을 완료하였다고 한다(https://www.sisajournal.com/news/articleView.html?idxno=319719 참조 마지막 검색

<sup>8)</sup> 선거운동의 경우는 딥 페이크가 선거에 미치는 영향이 있을 수 있음을 고려하여 이미 공직선거법에 "선거운동을 위하여 딥페이크 영상 등을 제작, 편집, 유포, 상영 또는 게시하는 경우에는 해당 정보가 인공지능 기술 등을 이용하여 만든 가상의 정보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사항을 딥페이크 영상 등에 표시하여야 한다(공직선거법 제82조의 8)"고 규정하고 있기도 하는 등, 딥 페이크 영상에 대한 규정은 이미 개별법에 도입되어 있거나 도입 논의가 진행 중이다.

인공지능 기본법 또한 제31조에 투명성 확보 의무가 규정되어 있는데, EU AI ACT 와 그 내용이 상당히 유사하나, 수범자 및 결과물의 표시 의무와 관련하여 다소 차이가 있다. EU AI ACT는 인공지능 AI 시스템 공급자(Providers of AI systems)가 AI 산출물임을 표시되도록 하는 기술적인 의무를 부과하고(EU AI ACT 제50조 제2항), AI 시스템 운영자(Deployers of an AI system)가 딥페이크를 구성하는 이미지, 음성 또는 비디오 콘텐츠를 생성하거나 조작하는 경우 해당 콘텐츠가 인위적으로 생성 또는 조작되었다는 것을 공개하도록 하는 의무를 부과한다(EU AI ACT 제50조 제4항). 이와 같이 EU AI ACT는 기술적인의무와 딥페이크 AI 생성물임을 밝히는 의무의 수범자를 다르게 하고 있어, 인공지능이 활용되는 단계별로 그 의무를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다.

반면 인공지능 기본법 제31조는 EU AI ACT와 유사하게 입법을 하면서도, 제31조 제1항부터 제3항에서 '인공지능사업자'에게 투명성 확보 의무를 일괄적으로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 여기서 '인공지능사업자'란 '인공지능개발사업자(인공지능을 개발하여 제공하는 자)'와 '인공지능이용사업자(인공지능개발사업자가 제공한 인공지능을 이용하여 인공지능제품 또는 인공지능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를 모두 포함한다(동법 제2조 제7호). '인공지능 제품'은 인공지능기술을 활용한 제품을 의미(동법 제2조 제6호)한다. 따라서 인공지능 기본법에 따르면, '투명성' 의무가 부과되는 '인공지능사업자'의 범위는 상당히 넓은 것으로 생각된다. 영상저작물 제작자의 경우에도 '이용자'인지 '인공지능이용사업자'인지에 대한 논란의 여지가 있다.

투명성 확보 의무는 위반 시 제재가 따르게 된다. 인공지능 기본법 제31조를 위반하게 되면 사실조사 및 과태료의 대상이 될 수 있다(동법 제40조 및 제43조). 사실조사의 경우 단순히 문서 제출만으로 끝나지 않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1) 투명성 확보 의무를 위반되는 사항을 발견하거나 혐의가 있음을 알게 된 경우 또는 (2) 위반에 대한 신고를 받거나 민원이 접수된 경우, 인공지능사업자에 대하여 관련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필요한 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동법 제40조 제1항). 조사결과 인공지능사업자가 이 법을 위반한 사실이 있다고 인정되면 인공지능사업자에게 해당 위반행위의 중지나 시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동법 제40조 제3항). 이에 더하여 중지명령이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의 경우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동법 제43조 제1항 제3호).

해당 조항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반의 신고를 받거나 민원이 접수된 경우, 관계 물품, 서류 등을 제출하게 하도록 하고 있는 것보다 강화된 규제로, 정부가 인공지능사업자의 법 위반 신고나 민원 접수만으로 사무소, 사업장에 대한 현장조사가 가능하게 되어 업계에서도 상당히 부담이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9

따라서 이와 같이 제재조치가 부과될 수 있는 투명성 확보 의무와 관련하여, 그 수 범자의 범위부터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만약 영상저작물을 만드는 방송사 등이 수범자에 포함된다면 결과물을 제공하는 사업자가 결과물에 법을 위반하지 않으면서 고지 및 표시를 할 방법 및 예외가 무엇인지에 관하여 보다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 인공지능 기본법은 고지 또는 표시의 방법 및 그 예외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는 데(제31조 제4항), 투명성 확보 의무의 주된 목적은 명예훼손 및 허위조작정보 유통 등을 방지하기 위함이므로 그 외 창작의 도구로서 인공지능을 활용하는 경우에는 그 의무를 완화하여 줄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보도 시사프로그램을 제작하는 경우 일부 음향 또는 CG 작업 등에 인공 지능을 활용하여 가상의 음향, 이미지 또는 영상 등을 포함한 결과물을 제공하게 될 수 있다. 드라마를 제작하는 경우에도 전체 작품은 작가가 작성하되, 일부 음향이나 대본의 일부 요소를 인공지능이 제작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도 다른 경우와 유사하게 인공지능 생성물이라는 사실을 표시하도록 한다면 해당 영상의 예술적 가치 평가나 시청자의 감상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그 의무를 완화, 면하여 줄 필요가 있고, 영상뿐만 아니라 다른 콘텐츠의 결과물 또한 각기 특성이 있을 것이므로 음향, 이미지, 영상 등 구체적인 내용의 규율을 위해서는 각 콘텐츠 제작자로부터 적극적인 의견 수렴 과정을 거칠 필요가 있다.

<sup>9)</sup> 이와 관련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사실조시를 필요 최소한의 범위 내 실시하겠다는 입장을 보도자료를 통해 밝힌 바 있다.

더불어 인공지능 기술의 발달에 따라, 디지털 워터마크(인공지능 제공사업자에게 사진, 음성, 영상 등에 저작권 정보 등을 식별할 수 있도록 눈에 보이지 않는 특정 암호를 부호화하여 숨겨 놓은 것) 등 표시 의무 이행 수단이 다양해지고 있다. 미국은 이전에 '안정적이고 안전하며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의 개발 및 사용에 관한 행정명령'을 통해 정부가검증된 AI 생성 콘텐츠에 대한 인증 및 워터마크 지침을 개발하도록 했고, 구글 등 7개 기업은 인공지능 기술로 작성된 콘텐츠에 워터마크를 삽입하는 등의 이용자 안전 조치를 취하기로 한 바 있다. 향후 인공지능 기본법의 경우에도 인공지능 제공사업자에 대하여 위와 같은 기술적인 의무를 부여하고, 그 후속 사업자의 경우에는 해당 워크마크를 별도로 삭제하지 않을 의무만을 부과하는 등의 방법도 생각해볼 수 있다.

# 4. 나가며

저작권과 관련된 판례는 아니나 법원은 다부스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제기된 소송에서 "인공지능을 발명자로 인정할 경우 향후 인간 지성의 위축을 초래하여 미래 인간의 혁신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우려, 연구 집약적인 산업 자체가 붕괴될 우려, 발명이나 그 결과물과 관련된 법적 분쟁이 발생할 경우 인공지능의 개발자인 인간이 책임을 회피함으로써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질 우려 등이 엄존하고, 소수 거대 기업 등이 강력한 인공지능을 독점함으로써 특허법이 소수의 권익만을 보호하는 수단으로 전략할 위험성도 있다"(서울행정법원 2023. 6. 30. 선고, 2022구합89254 판결)고 설시하였다.

창작의 영역에 이를 대입해보면 창작물을 학습한 인공지능 산출물의 수준이 일정 이상에 이르러 인공지능 산출물이 저작물을 대체하게 될 경우, 인간 창작성의 위축을 초래 하여 인간의 창작 영역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고, 창작과 관련된 문화 산업 자체 가 붕괴될 것이며, 소수 거대 기업 등이 강력한 인공지능을 독점하게 되어 다수의 창작자가 창작 활동을 하기 어렵게 될 수도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인공지능은 창작자에게 좋은 도구 이자 동시에 위협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인공지능의 발전이 향후 국가 경쟁력 확보에 중요한 과제라는 점은 명확하다. 또한 인공지능과 관련된 포괄적인 법제인 인공지능 기본법이 빠르게 입법된 것은 향후 인공지능 산업의 경쟁력 확보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인간이 이루어 온 창작과 예술의 영역에 대한 보호도 중요하다. 따라서 인공지능 기본법과 관련된 논의의 장 에 저작권자 및 저작물에 대한 쟁점들을 논의할 수 있는 장이 열리고, 실제로 인공지능과 저 작자가 상생할 수 있는 해법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